

오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

제정 2000년 5월 12일 조례 제 589호
 개정 2003년 9월 19일 조례 제 752호
 개정 2005년 12월 28일 조례 제 854호
 개정 2006년 8월 14일 조례 제 891호
 개정 2008년 1월 15일 조례 제 949호
 (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문개정에 따른
 오산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)
 일부개정 2021년 5월 17일 조례 제1899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21조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6. 8. 14, 2008. 1. 15, 2021. 5. 17>

제2조(감사청구 주민수) 「지방자치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. <개정 2003. 9. 19, 2005. 12. 28, 2006. 8. 14, 2008. 1. 15, 2021. 5. 17>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3. 9. 19 조례 제752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5. 12. 28 조례 제854호>

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6. 8. 14 조례 제891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8. 1. 15 조례 제949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1. 5. 17 조례 제1899호>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